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도경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12년 6월 5일

3. 제안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안 제7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안 제8조)
- 자살통계 분석, 홍보·교육(안 제9조, 제10조)
-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민간단체 지원(안 제12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

- 동 조례안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

- 자살예방 기본정책 수립시 개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사전예방 대책과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고,
- 자살위험에 노출된 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주민의 자살예방 시책 협조, 신고 및 구조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도지사의 주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 의무와 교육감의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의 교육과정 반영 등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의무적 설치와 자살관련 상담, 자살 예방 홍보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살예방 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 자살자의 가족 및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사료됨

【자살 관련 현황】

가. 전국자살률 현황('10. 12. 31현재)

(단위: %)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전남	전북	부산	인천	경남	제주	광주	대구	경기	대전	서울	울산
446	444	35.9	35.4	33.9	33.2	32.9	32.2	32	31.4	30.7	29.7	29.5	29.2	26.2	24.4

※ 자료출처 : 통계청(인구십만명당 자살률)

나. 전국 1일 자살사망자 수(2010년 기준)

(단위 : 명)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인천	대구	강원	전남	전북	충북	광주	대전	울산	제주
93	73	32	29	26	25	24	20	18	18	17	1.5	12	12	07	05

※ 자료출처 : 통계청

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충북인구수	1,488,945	1,488,803	1,493,065	1,506,608	1,519,587	1,527,478	1,549,528
자살 사망자수	445 (2.99%)	487 (3.27%)	421 (2.82%)	467 (3.10%)	509 (3.35%)	640 (4.19%)	550 (3.55%)

※ 자료출처 : 통계청

라. 시군별 자살률

(단위:%)

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국	24.7	21.8	24.8	26	31	31.2
충청북도	32.7	28.2	31.1	33.6	42	35.9
청주시	26.1	15.7	23.5	26.1	33.5	28
충주시	35.8	36.5	31.2	34.5	43.6	41.6
제천시	42.6	37.1	33	47.8	45	41.2
청원군	35.9	36.7	40.1	37.8	50.4	41.1
보은군	23.9	35.4	47.5	22.7	37.2	49
옥천군	37.4	39.8	38.3	27.5	57.1	29.7
영동군	34.5	39	41.6	25.9	47.7	47.7
증평군	16.3	22.9	19.5	25.3	36.7	45.1
진천군	38.2	38.2	51.6	46.3	67.1	50.4
괴산군	61.4	63	45.7	68.1	62.7	54.6
음성군	35	28.9	30.8	38.2	42.4	35.6
단양군	49.4	44.5	42.6	65.3	53.3	31.6